[] 기능통화 []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(변경신청)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1. 신고(청)인 인적사항								
①법인명				②사업자등	등록번호			
③본점 소재지								
④대표자 성명			⑤생년월일	<u> </u>				
2. 신고내용								
⑥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대상 [] 기능통화 도입기업 [] 해외사업장								
(1) 최초 신고시								
	[]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1호의 방법							
⑦적용할 과세표준	계산방법 []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의 방법							
	[]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3호의 방법							
⑧신고방법 적용사업연도 개시일				년 월	일			
⑨채택한 기능통화 종류								
⑩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적용시 적용환율 신고			[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[] 평균환율					
(2) 변경신청시								
⑪당초신고방법		12 변경	신청방법					
⑬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개시일				크 월	일			
⑩변경사유	 []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[]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[]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[]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다른 경우 							
				⑯변경 기능통화				
①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「법인세법」 제53조의2(제 53조의3)제1항제2호로 변경할 경우 적용환율 신 고			[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					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1조의2 제1항·제3항 및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고서(변경신청서)를 제출합니다.								
세묘셔자 그의		•	신고(신청	J)인		년	월 일 (서명 또는 인)	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1. ⑪당초신고방법, ⑫변경신청방법은 ①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 1,2,3의 방법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.
- 2. ⑭변경사유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1조의2제2항 및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에 O를 표시하며, ⑩,⑭,⑪란도 해당사유에 O를 표시합니다.
- 3. 과세표준 계산방법 변경신청을 한 법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변경하기 전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.